KOSHA GUIDE

B - M - 4 - 2025

# 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2025. 3.

##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임

#### 기술지원규정의 개요

ㅇ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4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24년 11월 기계·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심의(개정)

-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 규격 및 자료

- HSE: AFAG604(rev1) Wood chippers
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
- 고용노동부 고시「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」제5장 파쇄기 또는 분쇄기
- 고용노동부 고시「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[별표2] 자율안 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
- ㅇ 기술지원규정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원규정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의 기술지원규정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규정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5년 3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<u>목 차</u>

1. 목 적
2. 적용범위1
3. 용어의 정의1
4. 파쇄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2
4.1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2
4.2 그 밖의 관련 법령2
5. 위험성 평가3
5.1 위험성 평가 자율점검 항목3
5.2 위험요인3
6. 목재 파쇄기의 작업 전 주의사항4
6.1 개인 보호구의 착용4
6.2 작업 장소 선택4
6.3 방호조치5
6.4 작업 전 주의사항6
7. 파쇄기 작동 시 주의 사항6
8. 비상조치7
9. 연료주입 시 주의사항8
10. 유지·보수 시 주의사항8
11. 파쇄기 이동 시 주의 사항9
<부록> 파쇄기 자율안전점검표10

### 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#### 1. 목적

이 규정은 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목재 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목재 파쇄기(Wood chippers)"란 목재를 파쇄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.
  - (나) "동력인출축(Power take-off shaft)"이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설치되어 동력의 일부를 분기하여 인출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- (다) "연동장치(Interlock System)"라 함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적, 기계적 또는 유공압을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.
  - (라) "감응형 방호장치(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)" 라 함은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감지하거나, 방호차단을 위하여 감지소자, 제어·감시장치, 출력신호 개폐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파쇄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

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4.1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

안전보건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에 따라 사업주는 목재 파쇄기 사용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
- ⑧ 사업주는 분쇄기·파쇄기·마쇄기·미분기·혼합기 및 혼화기 등(이하 "분쇄기등"이라 한다)을 가동하 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
  - 2.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  - 3.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 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-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(危害)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
  - 2.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  - 3.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 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
#### 4.2 그 밖의 관련 법령

목재 파쇄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포함되므로,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정의 및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

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(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##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

-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라. 파쇄기 또는 분쇄기

#### 고용노동부 고시「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」제5장 파쇄기 또는 분쇄기

제10조(정의) 1. "파쇄기 또는 분쇄기"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,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분쇄 또는 패쇄 챔버
- 나.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(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)
- 다. 소재 공급장치

제11조(제작 및 안전기준)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.

#### 고용노동부 고시 「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[별표2]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 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

4. 파쇄기 또는 분쇄기

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. 다만,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- 가. 식품용
- 나.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

#### 5. 위험성 평가

5.1 위험성 평가 자율점검 항목

목재파쇄기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작업유형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·제거하고, 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확인하여야 한다. 위험성 평가 자율점검 항목은 <부록> 파쇄기 자율안전점검표를 참고할 수 있다.

#### 5.2 위험요인

- (1) 목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파쇄기의 칼날에 말릴 위험
- (2) 파쇄기의 동력전달부에 말릴 위험
- (3) 짧은 목재를 손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손이 칼날에 말릴 위험
- (4) 이동식 파쇄기의 급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부딪힐 위험
- (5) 소음 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
- (6) 비산되는 칩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

#### 6. 목재 파쇄기의 작업 전 주의사항

- 6.1 개인 보호구의 착용
  - (1) 목재 파쇄기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.
  - (가) 안전모
  - (나)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
  - (다) 청력 보호구
  - (라) 목이 긴 안전장갑
  - (마) 안전화
  - (바) 보호복
  - (2) 근로자는 작업 시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한다.
  - (3) 비누와 같은 손 세정용품, 물 그리고 종이 수건을 준비해야 한다.

#### 6.2 작업 장소 선택

- (1) 가능한 한 견고한 지반을 선택하여 파쇄기를 고정시켜야 한다.
- (2)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배기가스가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.
- (3) 파쇄기를 견인 차량(Tow vehicle)에서 분리할 때에는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고정 시키고. 필요 시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사용해야 한다.
- (4) 작업장소에 관계자외의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표지판을 설치하여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 공공장소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출입금지 테이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.
- (5) 도로변 등의 길가에서 작업할 때에는 배출관에서 나무 조각이 도로 쪽으로 날아가지

않도록, 그리고 일반인들 또는 동료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무 조각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(6) 목재를 목재파쇄기에 투입 후 작업자가 경사면에 서지 않도록 위치해야 한다.

#### 6.3 방호조치

#### 6.3.1 덮개의 설치

수동식 덮개의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고 카운터웨이트,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덮개가 급격하게 닫히지 않아야 한다.

#### 6.3.2 덮개의 연동장치 설치

- (1)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목재 파쇄기의 작동부를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(Nomal open)으로,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(Nomal close)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고 그이후에 발생하는 위험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작동부의 운전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제어시스템에 대한 설계·선정·검증·정비에 관한 세부내용은 KOSHA GUIDE 「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」을 참조한다.

#### 6.3.3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

- (1) 목재파쇄기 운전 중에 감응형 방호장치가 작동되면 감응형 방호장치가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고 제어장치를 수동으로 재작동시키기 전까지는 파쇄기를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감응형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기술지원규정(E-8)「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」을 참조한다.

#### 6.4 작업 전 주의사항

- (1) 작업 전 목재 파쇄기의 작동 모드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.
- (2) 목재 파쇄기의 위험한 부분(벨트, 도르래, 축 등)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.
- (3) 목재 파쇄기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이동용 목재 파쇄기의 이송 슈트(Infeed chutes)는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(4) 목재 파쇄기의 부속품들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5) 투입 호퍼(Infeed hopper)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6) 소음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7) 동력인출축(Power take-off shaft)에 의해 기계가 작동될 때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.
  - (가) 트랙터에서 목재 파쇄기까지 동력인출축에는 전체 길이에 맞게 축에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.
  - (나) 보호덮개는 적합하게 장착되고 작업조건에 맞아야 한다.
  - (다) 동력인출축의 속도가 기계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.

#### 7. 파쇄기 작동 시 주의 사항

- (1) 목재가 파쇄기에 투입될 때 손이 같이 말려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.
- (2) 작업에 맞는 적절한 엔진속도를 설정해야 한다.
- (3) 파쇄된 칩에 돌, 금속 및 이물질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.
- (4) 비산되는 칩에 맞지 않도록 투입 롤러(Infeed rollers)의 정면에 서지 않도록 한다.
- (5) 목재는 투입 롤러 또는 파쇄기 부속품에 걸리는 대로 진행되도록 두어야한다. 가동 중에 목재를 제거할 시 투입 롤러 등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.

(6) 파쇄되는 목재의 길이가 짧은 경우 마지막 부분은 최소 1.5 m 길이의 보조막대를 사용하여 목재를 밀어 넣어야 한다.<그림 1 참조>



<그림 1> 보조 막대의 사용

- (7) 파쇄기가 작동하는 중에는 손과 발을 포함한 신체의 어떠한 부위도 투입 호퍼 (Infeed hopper) 안으로 넣으면 안 된다.
- (8) 파쇄기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는 항상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9) 작업 중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투입 호퍼 앞부분에 파편, 잔해를 제거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
- (10) 파쇄기가 유지·보수 중이거나 작업 중이 아닐 때는 엔진 시동열쇠는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작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.

#### 8. 비상조치

- (1)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당일 작업 사항을 확인하고, 해당 작업 근로자와 적합한 비상연락 절차에 대해 의논하여야 한다. 휴대전화 또는 무전기 및 사전에 협의된 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.
- (2)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 장소의 지점으로부터 주요 도로까지 떨어진 거리, 응급차 등의 구조 차량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한 지 등과 같이 위급상황 시 조치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.

#### 9. 연료주입 시 주의사항

- (1) 연료 주입 전에 엔진을 정지시키고, 만약 필요하다면 연료 재주입전 엔진의 열을 식혀야 한다.
- (2) 휘발유 증기는 인화 가능성이 높음으로 파쇄기를 점화원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위치시켜야 한다.
- (3) 불, 담배 또는 목재 파쇄기로 인해 휘발유 증기가 점화될 수 있으므로, 점화를 피하기 위해 연료통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및 수로나 배수로가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.
- (4) 휘발유 등을 담는 용기(Containers)에는 내용물 표시를 확실히 하고, 적합한 캡이 씌워 져야한다.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를 담을 수 있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.
- (5) 연료 캡을 교체할 때에는 연료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체해야 한다.
- (6) 연료가 눈에 들어갔다면 물로 즉시 씻어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.

#### 10. 유지·보수 시 주의사항

- (1) 유지·보수는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.
- (2) 파쇄기 부품과 절단 날의 손상 및 마모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- (3) 절단 날을 교체하는 등의 날카로운 날을 취급하는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.
- (4) 절단 날 교체 등 절단 날 취급 시에는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지, 시동 열쇠가 제거 됐는지, 그리고 파쇄기의 작동부위가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5) 투입 호퍼(Infeed hopper) 또는 배출관을 만지거나, 가드/덮개를 열기 전에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지, 시동 열쇠가 제거되었는지, 그리고 파쇄기의 작동부위가 완전히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KOSHA GUIDE

B - M - 4 -20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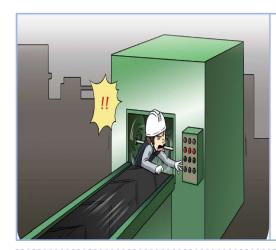
(6) 절단 날이 무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교체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.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명시된 최소 치수만큼 닳았다면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.

#### 11. 파쇄기 이동 시 주의 사항

- (1) 파쇄기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, 시동 열쇠를 제거해야 한다.
- (2) 파쇄기 이동 시에는 파쇄기 부품들을 정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.
- (3) 운송 위치에서는 투입 호퍼(Infeed hopper)와 칩(Chip) 배출관을 고정시켜야 한다.
- (4) 견인 브래킷(Towing bracket)과 부착물을 확인한 후 자키 휠(Jockey wheel)을 들어 올려 고정시켜야 한다.
- (5) 견인 차량(Towing vehicle)에 전기장치와 안전 체인을 연결해야 한다.
- (6) 파쇄기 이동 시에는 도로상에 위험요인은 없는지,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지 반드시확인해야 한다.

〈부록〉

### 파쇄기 자율안전점검표



#### ·분쇄기 또는 파쇄기란?

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

#### ·주요 사망사고 사례

- ① 분쇄기에 인화성 물질이 든 폐플라스틱 용기 투입 작업 중 폭발
- ② 스티로폼 **분쇄기**에서 폐스티로폼을 누르면서 투입작업 중 내부로 추락하며 칼날에 **끼임**
- ③ 분쇄기 투입구로 원료 투입 중 회전날에 끼임

모든 작업유형 별로 <sup>©</sup>「위험성평가」를 실시하여 <sup>©</sup>위험요인을 확인·제거하고, <sup>©</sup>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!

#### 핵심 안전조치

- ❶ 투입구 덮개 설치 및 연동장치 정상작동 확인
- ② 분쇄물 투입 시 수공구 사용 및 추락방지조치(안전난간 등) 확인
- ❸ 청소·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및 "조작금지" 표지 게시

구 분	자율점검 항목	점검 결과	조치 사항
관리적 사항	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사용('13.3.1. 이후 제조·출고 제품) [적용제와. ① 시품용, ②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]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[위험이 예상되는 곳 표지판 설치,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]		
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	③ 투입구 덮개 설치 및 연동장치(인터록장치) 정상작동 확인 ④ 방호장치 임의 해체금지(연동장치 등) 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(비상정지장치 등)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⑥ 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[제어반 전기기계·기구는 물기(습기)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] ⑦ 투입물 중 인화성 물질 포함으로 화재·폭발 위험 확인 ⑧ 작업장 및 해당 설비 장소 수시 정리·정돈·청소 실시 [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예방 조치 실시] ⑨ 분쇄기·파쇄기 고소부위(투입구 등) 작업 통로 확보 및 안전조치 [적절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]		
정비·청소· 검사·수리· 교체 작업 시	①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[불시기동방지를 위한 동력전원 차단, 잠금장치 및 "점검 중 조작금지" 표지 게시] ② 비상 시 연락조치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		
근로자 준수사항	① 분쇄물 과다투입 여부 확인 및 적정용량 투입 준수 ③ 분쇄기·파쇄기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[분쇄물 적정용량 투입, 투입용 보조기구(수공구) 사용,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,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 금지] ④ 적절한 작업복, 보호구 등의 착용 [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]		

###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5. 2. 3.
 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  - 개정사유 :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
  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8항 및 제9항 개정 내용 반영
  - 주요 개정내용
    - "4. 파쇄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" 항목 추가
    - "6.3 방호조치" 항목 추가
    - "<부록> 파쇄기 자율안전점검표" 추가
- □ 재공표 : 2025. 3. 26.
  - 기술지원규정 영문 명칭(KSH-GUIDANCE→KOSHA GUIDE)으로 재공표